

2015년 옥련1동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사목적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I 감사 개요

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5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감사기간 : 2015. 04. 20. ~ 04. 23. [4일간]

감사범위 : 2013. 04. 0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감사반 : 감사담당 외 3명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1

총괄

감사처분 내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10건)		재정상 (5건)			신분상 (1건)	
시정	주의	추징 (2)	회수 (1)	환부 (2)		
5	5	206천원	15천원	367천원	훈계(1)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야	지적사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10건	5건	1건	
1	예산회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	"	물품구입 및 계약관련 가격조사 부적정	주의			
3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 환불 부적정	시정	환부 (357천원)		
4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 관리 소홀	시정			
5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징수 부적정	시정	추징 (40천원) 회수 (15천원) 환부 (10천원)		
6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및 교부관리 부적정	시정		훈계 1	
7	"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업무 부적정	시정	추징 (166천원)		
8	사회복지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업무 소홀	주의			
9	공사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업무 처리 소홀	주의			
10	민방위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주의			

2

총 평

- 이번 옥련1동 종합감사는 예산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행정 전반에 대해 총 10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5, 주의5), 재정상 조치(추징 206천원/2건, 회수 15천원/1건, 환부 367천원/2건), 신분상 조치(훈계 1명) 처분 요구함.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I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 회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격려품 지급대상은 소속 상근직원과 이주민 및 불우소외계층,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유공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업무추진 유관기관 등의 직무활동에 집행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 그러나,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자생단체 단합대회 격려, 새마을부녀회 격려, 자생단체원 병문안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 **【 행정상 주의 】**

2

예산 회계

물품구입 및 계약관련 가격조사 부적정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그러나,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는 디지털 복사기 구입, 주민자치 행사용품 구입 등에 있어 가격조사를 소홀히 하여 예산 절감에 소홀. **【 행정상 주의 】**

3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 환불 부적정

○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그러나, 옥련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할 계산이 아닌 월할 계산으로 부적정 환불함.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부 (357천원) 】**

4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관리 소홀

○ 주민등록번호 부여시에는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수기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 그러나,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는 ○○○ 외 11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관리에 소홀함.

【 행정상 시정 】

5**주민등록****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용모변경 및 성명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며, 2006년 11월 1일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에 형광요소를 강화하여 위·변조 식별이 용이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선하여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면제를 규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강화에 따른 재발급처리지침

(민원지적과-14707, 2006.11.01)」

○ 그러나,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는 △△△ 외 12인에 대해 착오에 의한 수수료 면제처리, 또는 비면제 처리 등 수수료 부과 처리에 소홀함.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40,000원)·회수(15,000원)·환부(10,000원) 】

6**주민등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및 교부관리 부적정**

○ 읍·면·동에서는 시·군·구로부터 인수한 주민등록증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교부사항(교부일자, 수령자)을 주민등록증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및 안내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0조, 주민등록사무편람

○ 그러나,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는 ◇◇◇ 등 23명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증 송부 지연, 발급대장 정리 미흡, 재발급 신청서 미정리 등 교부관리에 소홀함. **【 행정상 시정, 신분상 훈계(1명) 】**

○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분기별 시행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는 과태료의 2/1의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며,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로 경감하도록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조

▷ 주민등록법 제40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 그러나,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는 ☆☆☆ 외 10명에 대하여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 1/2, 자진납부(20%) 경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제정리기간 3/4 자진납부(20%)경감을 적용하는 등 과태료부과 업무에 소홀함.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166,000원) 】

○ 동주민센터에서는 정기계획에 의한 가정방문 실시를 권고함은 물론, 정기계획 외 신규복지대상자 선정, 전입, 가구원 추가 등 가구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14일 이내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자격관련 조사가 아닌 지원사항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그러나,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는 2013.4월부터 ~ 현재까지 신규선정 및 전입 기초생활 수급자 ◎◎◎ 등 85 명에 대해 선정(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복지대상자 모니터 업무를 소홀함. **【 행정상 주의 】**

○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 지정을 통해 공사 진행 단계별로 수급자가 착·준공신고서 등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

▷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

○ 그러나,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는 발주된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 착·준공계 미접수, 감독공무원 미지정 및 준공검사(감독)조서 생략한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담당업무를 소홀함. **【 행정상 주의 】**

○ 민방위 훈련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등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옥련1동 주민센터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및 체류 중인 불참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3개월 이상 출국자로) 일괄 면제 조치하는 등 민방위 업무 처리에 소홀함.

【 행정상 주의 】